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전홍배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213)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9. 2.

발의의원 : 전홍배 의원,
곽동환 의원, 신달호 의원

1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규정된 공유재산 현황 공개에 대한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, 친환경자동차의 충전편의 개선을 위해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공유재산 임대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(안 제 7조)
- 나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3 제5항에 따른 감면율(안 제32조 제7항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47조, 제92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시행령 제52조,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 3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)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, 공개 내용·방법·절차 등은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를 따른다.

제3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 제5항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제7항 신설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갱신된 사용허가 및 체결되거나 갱신된 대부계약에도 적용하되, 시행일 이후의 사용 또는 대부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재산의 증감 및 현황) <u>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	제7조(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) <u>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, 공개 내용·방법·절차 등은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를 따른다.</u>
제3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 ① ~ ⑥ (생략) 〈신 설〉	제3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47조(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따른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·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·분석하여야 한다.

제92조(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,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52조(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)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“개정된 가격”이란 법 제46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.

② 법 제47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제11조의3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~ ④ (생략)

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